

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태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3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발 의 자 : 이태성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제리, 이성배, 이병도, 봉양순
권수정, 임종국, 성흠제, 이정인
이영실, 채인묵, 김정태 의원(11명)

1. 제안 이유

- 급속한 도시화로 서울과 지방, 도시와 농촌 간 지역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상생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또한, 서울시는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과 심의 기능을 가진 “지역 상생발전 위원회”의 역할을 10명으로 구성된 대회협력기금의 국내협력계정 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음.
- 서울시의 상생교류 사업 예산이 2017년 98억원(일반회계 82억, 기금 16억)에서 2020년 644억원(일반회계 626억, 기금 18억)으로 대폭 증가하고,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명시하여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병행 규정을 삭제함(안 제9조제2항).
- 나.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).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2. 서울특별시 지역 간 상생교류 소관 실·본부·국장
3.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역 간 상생교류 협력의 촉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교류협력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<u>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한다.</u></p> <p>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. 지역 간 상생협력 사업의 위탁 및 운영 3. 지역 간 상생협력 위탁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 	<p>제9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>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

정되는 사항

<신 설>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신 설>
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2. 서울특별시 지역 간 상생교류 소관 실·본부·국장
3. 지역 간 상생교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<신 설>

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<신 설>

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- 위원회 운영비용 : 참석수당 39,000천원+업무추진경비 9,000천원=48,000천원
 - 참석수당 : 수당단가 150천원×13명×연 4회×5년=39,000천원
 - ※ 참석수당 단가 : 「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(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)에 따라 2시간 초과 150천원 적용
 - ※ 지급인원 : 위원 15명 중 시의원(1명) 및 담당 국장(1명)은 제외
 - 업무추진경비 : 경비단가 30천원×15명×연 4회×5년=9,000천원
 - ※ 업무추진경비 단가 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남승우
조사분석팀장	여차민
예산분석관	박주용
	☎ 02-2180-7943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